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2023. 6.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3-79
- 나. 제 안 자: 홍지광 의원 외 9인
- 다. 제안일자: 2023년 5월 23일(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3년 5월 25일(목)

### 2. 제안사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라.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마. 청년 문화예술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마포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7조)
- 사. 청년문화예술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아. 청년문화예술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자. 청년문화예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4. 관계법령

-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제3조
- 나. 「청년기본법」 제2조 ~ 제4조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 5. 검토보고

### 가. 제정 경위

- 동 조례 제정안은 2023년 5월 23일 홍지광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 취지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역량강화를 통해 마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 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7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자립 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 청년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 나.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현황

- 2023년 5월 기준, 서울시에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약 59,444명이며, 이 중 마포구가 5,167명(8.74%)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음.

- 특히, 마포구에 등록된 예술인 중 65.8%인 3,420명이 청년 예술인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마포구 청년예술인 현황(2023. 5월 기준)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인원(명)	5,200	<b>999</b>	<b>2,421</b>	1,220	374	105	53	28
비율(%)	100	<b>19.2</b>	<b>46.6</b>	23.5	7.2	2.0	1.0	0.5

- 출처: 2023.5.26.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완료자
- 청년예술인: 3,420명(마포구예술인활동증명완료자의 65.8%)

※ 마포구 청년인구: 97,223명 (2023년 5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현황)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4. 3. 28.> 4. 삭제 <2014. 3. 28.> 5. 삭제 <2014. 3. 28.>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2016. 5. 3.>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2016. 5. 3.>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현재 청년문화정책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조차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 예술인 개인의 창작활동 지원이나 인력 양성, 행사 중심의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 청년문화 활성화의 기반조성이나 네트워크 구성, 교류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시스템 개발, 청년 문화사업의 지속성 확보 등 청년 문화 환경권 조성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sup>3)</sup>.
- 이에, 체계적인 청년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화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마포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기성예술인에 비해 경력이나 활동기반이 취약한 청년예술인들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 목적, ► 정의,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 동 조례의 지원대상인 안 제2조제2호는 ‘청년 예술인’의 정의로 청년이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4)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여 마포구 청년 예술인 지원기준을 완화된 규정임.

3) 김경례,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인문사회21》통권8호 3권,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p.1187.

4)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대부분의 예술인 지원사업에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등록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성예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기반이 열악하여 예술활동증명 신청 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예술인의 경우 자격요건의 비현실성이 존재하여 지원 기준을 개선한 사항으로, 현재 관련 법령 및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실제 집행과정에서 사업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 안 제7조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서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마포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해당 기능을 기 설치된 청년네트워크에서 대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5)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 보다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 현재 마포구 청년 예술인에

---

5)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한 현황 자료가 미비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으므로, 마포구 실정을 반영한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본 조례가 선언적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임.

## 라. 검토 결과

- 동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청년 예술인들이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5호 라목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함.
-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으로 청년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내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도 채워줄 것으로 사료됨.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3.25.>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25.>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1.3.25.>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1.3.25.>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발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3.25.>

제17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3.25.]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